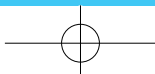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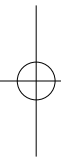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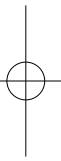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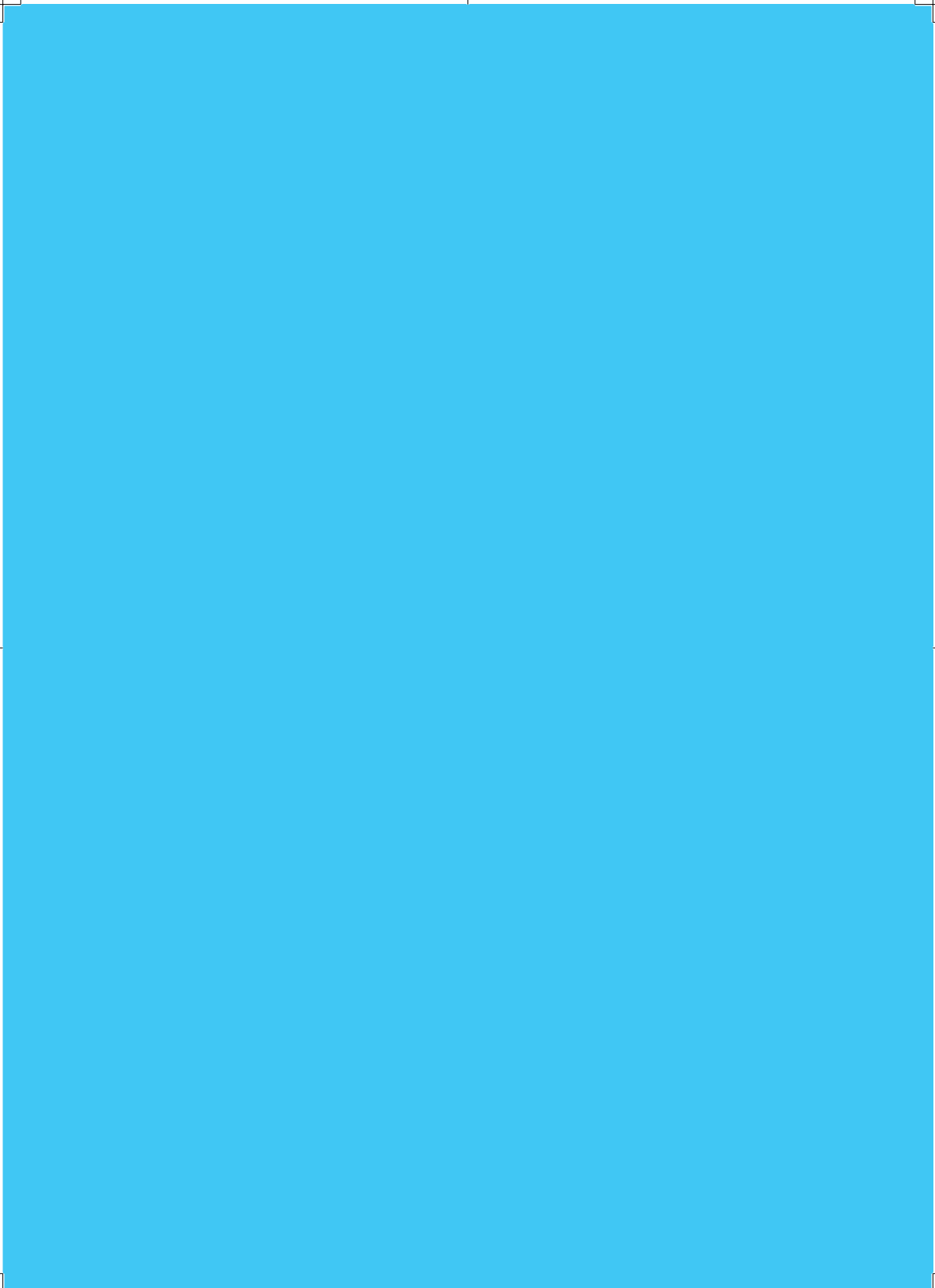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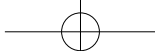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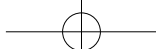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기초법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개
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공동행동은
권리보장활동, 법개정활동, 상담활동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된 복지제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소개

1부. 빈곤층, 이러한 복지를 이용해봅시다 ————— 0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2부. 수급권자 권리선언,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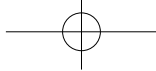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 ————— 43

- 생계급여 현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살인장벽 ‘부양의무자기준’
- 현실성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가짜소득부와 전면 개편하자!
-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와 및 강제근로 조항 폐지하자!
- 찢다 뺏는 기초연금 없애고, 노인빈곤 줄이자!
- 주소지가 없어도 수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4부. 부록 ————— 49

- 1 공공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서울형 기초보장제도·긴급복지 포함)
- 2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3 답답할땐? 상담전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을 소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기초법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개 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공동행동은 권리보장활동, 법개정활동, 상담활동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된 복지제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리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는 전 국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에 처한 이들이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낙인이나 편견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나 낙인 없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장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는 후 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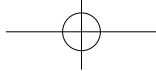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3. 복지수급의 권리는 ‘알 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평등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에 수급권자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제작했습니다.

4. 수급권자가 빈곤정책을 제대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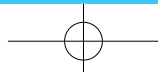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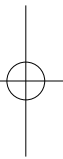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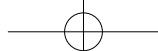
복지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수급을 받아야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의 힘으로 빈곤정책을 제대로 만듭니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확대를 위해 함께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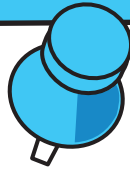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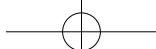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복지권리 안내수첩〉이 빈곤문제 해결과 수급권자 권리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사)참누리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평화주민사랑방 / 참여연대 /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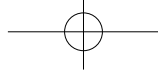




1부

빈곤층, 이러한 복지를 이용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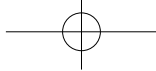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¹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¹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9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아래 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등이 소득으로 파악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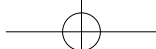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표1. 급여별/가구급여별 선정 소득기준¹ (단위 : 원)

구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30%)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43%)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50%)
1인 가구	1,707,008	512,102	682,803	751,084	853,504
2인 가구	2,906,528	871,958	1,162,611	1,278,872	1,453,264
3인 가구	3,760,032	1,128,010	1,504,013	1,654,414	1,880,016
4인 가구	4,613,536	1,384,061	1,845,414	2,029,956	2,306,768
5인 가구	5,467,040	1,640,112	2,186,816	2,405,498	2,733,520
6인 가구	6,320,544	1,896,163	2,528,218	2,781,039	3,160,272
7인 가구	7,174,048	2,152,214	2,869,619	3,156,580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 7인 가구기준과 6인 가구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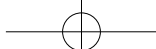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1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TIP. 소득공제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50%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34 1. 1. 이후 출생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4세 이하의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75세 이상 노인 (1944.12.31. 이전출생자)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10%

※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조건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소득에서 30%공제,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액보다 낮을 시 생계급여 지급(근로유지형·Gateway 제외)



※ 유의사항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

2. 수급신청자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 혹은 보증금의 경우 95%를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표2. 근로능력유무/주거지규모별 기본재산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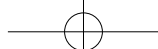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 능력자 가구	5,400	3,400	2,900
근로 무능력자 가구	8,500	6,500	6,000
주거용재산한도액	10,000	6,800	3,800

금융재산

-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씩 공제합니다. (수급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장기저축은 연 500만원 한도 3년, 최대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수급가구만 해당)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포함)

▷ 자동차

1~3급 장애인인 있는 가구의 경우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가 허용되고, 다른 가구의 경우 100%의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 위의 기준은 재산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일 뿐,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구청 혹은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즉,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 포함합니다.

※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합니다.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한 자녀가 수급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로 부양의무자로 분리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이거나,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능력유무를 판정하여 수급자로 선정/탈락되거나, 선정되더라도 부양능력미약구간에 해당 시 간주부양비 부과로 급여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판정 미약은 없음과 있음 금액 사이로, 간주부양비가 부과됩니다.

(미혼자녀와 아들 30%, 결혼한 딸 15%)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합니다.

예) 3인이 함께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1명 있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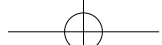


표3.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인	없음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미약	1,707,008 ~2,389,811 (2,526,372)	2,906,528 ~3,589,331 (3,589,331)	3,760,032 ~4,442,835 (4,442,835)	4,613,536 ~5,296,339 (5,296,339)	5,467,040 ~6,149,843 (6,149,843)
	있음	2,389,811 (2,526,372)	3,589,331 (3,589,331)	4,442,835 (4,442,835)	5,296,339 (5,296,339)	6,149,843 (6,149,843)
2인	없음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미약	1,707,008 ~2,869,619 (3,414,017)	2,906,528 ~4,069,139 (4,301,661)	3,760,032 ~4,922,643 (4,933,254)	4,613,536 ~5,776,147 (5,776,147)	5,467,040 ~6,629,651 (6,629,651)
	있음	2,869,619 (3,414,017)	4,069,139 (4,301,661)	4,922,643 (4,933,254)	5,776,147 (5,776,147)	6,629,651 (6,629,651)
3인	없음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미약	1,707,008 ~3,211,021 (4,045,610)	2,906,528 ~4,410,541 (4,933,254)	3,760,032 ~5,264,045 (5,564,847)	4,613,536 ~6,117,549 (6,196,440)	5,467,040 ~6,971,053 (6,971,053)
	있음	3,211,021 (4,045,610)	4,410,541 (4,933,254)	5,264,045 (5,564,847)	6,117,549 (6,196,440)	6,971,053 (6,971,053)
4인	없음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미약	1,707,008 ~3,552,422 (4,677,203)	2,906,528 ~4,751,942 (5,564,847)	3,760,032 ~5,605,446 (6,196,440)	4,613,536 ~6,458,950 (6,828,033)	5,467,040 ~7,312,454 (7,459,626)
	있음	3,552,422 (4,677,203)	4,751,942 (5,564,847)	5,605,446 (6,196,440)	6,458,950 (6,828,033)	7,312,454 (7,459,626)
5인	없음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미약	1,707,008 ~3,893,824 (5,308,796)	2,906,528 ~5,093,344 (6,196,440)	3,760,032 ~5,946,848 (6,828,033)	4,613,536 ~6,800,352 (7,459,626)	5,467,040 ~7,653,856 (8,091,219)
	있음	3,893,824 (5,308,796)	5,093,344 (6,196,440)	5,946,848 (6,828,033)	6,800,352 (7,459,626)	7,653,856 (8,09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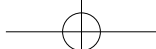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표4.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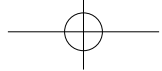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구분	1인	2인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614,523	830,436
	대도시	일반재산*	242,736,760
		주거용재산**	287,088,738
	중소도시	일반재산	150,736,760
		주거용재산	195,088,738
	농어촌	일반재산	116,236,760
		주거용재산	160,588,738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830,436	1,046,350
	대도시	일반재산	247,914,544
		주거용재산	307,849,662
	중소도시	일반재산	155,914,544
		주거용재산	215,849,662
	농어촌	일반재산	121,414,544
		주거용재산	181,349,662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84,067	1,119,981
	대도시	일반재산	251,598,734
		주거용재산	322,621,846
	중소도시	일반재산	159,598,734
		주거용재산	230,621,846
	농어촌	일반재산	125,098,734
		주거용재산	196,121,846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37,698	1,353,612
	대도시	일반재산	255,282,924
		주거용재산	337,394,031
	중소도시	일반재산	163,282,924
		주거용재산	245,394,031
	농어촌	일반재산	128,782,924
		주거용재산	210,894,031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291,329	1,507,242
	대도시	일반재산	258,967,114
		주거용재산	352,166,215
	중소도시	일반재산	166,967,114
		주거용재산	260,166,215
	농어촌	일반재산	132,467,114
		주거용재산	255,666,215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3인	4인	5인
984,067	1,137,698	1,291,329
251,598,734	255,282,924	258,967,114
322,621,846	337,394,031	352,166,215
159,598,734	163,282,924	166,967,114
230,621,846	245,394,031	260,166,215
125,098,734	128,782,924	132,467,114
196,121,846	210,894,031	225,666,215
1,199,981	1,353,612	1,507,242
356,776,518	260,460,708	264,144,898
343,382,769	358,154,954	372,927,138
164,776,518	168,460,708	172,144,898
251,382,769	266,154,954	280,927,138
130,276,518	133,960,708	137,644,898
216,882,769	231,654,954	246,427,138
1,353,612	1,507,242	1,660,873
260,460,708	264,144,898	267,829,088
358,154,954	372,927,138	387,699,323
168,460,708	172,144,898	175,829,088
266,154,954	280,927,138	295,699,323
133,960,708	137,644,898	141,329,088
231,654,954	246,427,138	261,199,323
1,507,242	1,660,873	1,814,504
264,144,898	267,829,088	271,513,278
372,927,138	387,699,323	402,471,508
172,144,898	175,829,088	179,513,278
280,927,138	295,699,323	310,471,508
137,644,898	141,329,088	145,013,278
246,427,138	261,199,323	275,971,508
1,660,873	1,814,504	1,968,134
267,829,088	271,513,278	275,197,468
387,699,323	402,471,508	417,243,692
175,829,088	179,513,278	183,197,468
295,699,323	310,471,508	325,243,692
141,329,088	145,329,088	148,697,468
261,199,323	275,971,508	290,743,692



기초생활보장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실제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하고 책정됩니다.

표5.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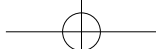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가구 규모	생계급여 급여기준 (중위소득30%)
1인 가구	512,102
2인 가구	871,958
3인 가구	1,128,010
4인 가구	1,384,061
5인 가구	1,640,112
6인 가구	1,896,163
7인 가구	2,152,21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생계급여액에 1인 추가시마다 250,816원을 더합니다.

2. 주거급여

1 임차가구

-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임차료는 보증금을 연이율 4%를 적용하여 임차료를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임차료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 공공기관(LH, 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거주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부과·고지·수납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상의 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예시1)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월 13,3만원으로 산출
산식 : $[1,000\text{만원} \times 0.04 \div 12] + 10\text{만원} = 3.3\text{만원} + 10\text{만원} = 13.3\text{만원}$

예시2) 보증금 2,000만원, 월 임차료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월 12,6만원으로 산출
산식 : $[2,000\text{만원} \times 0.04 \div 12] + 6\text{만원} = 6.6\text{만원} + 6\text{만원} = 12.6\text{만원}$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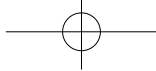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 $K(\text{자기부담율 } 0.3) \times Y(\text{소득인정액} - \text{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표6.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가구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가구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가구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가구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가구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가구	441,000	389,000	296,000	267,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는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2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노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 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

구조안전(3개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표7. 주택개량 지원내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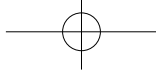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초과 ~ 68점이하	68점 초과	
수선주기	일반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도시지역	4,158천원	7,722천원	11,280천원 10% 가산 ²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능·설비(창호, 난방공사, 단열 등)	구조,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보수범위

구분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4%이하
지원율	100%	90%	80%

1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2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의료급여

-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은 표8과 같습니다.

표8.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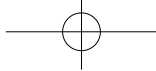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 1종: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2종: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해 지원됩니다.(비급여, 선택진료과목 등 제외)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 약국은 처방조제가 기준이며,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 ※ 2종 입원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 제왕절개분만 산모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제

- 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 ※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료비 지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2019년)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기재된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본인부담금 보장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 수급 가구원 내 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9. 교육과정별 교육급여 지원 내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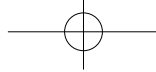
급여종류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시에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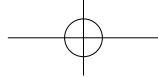
5.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6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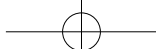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6.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구당 75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긴급복지가 필요할 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지원요청 혹은 신고가 있을 때,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한 후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즉,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긴급성'입니다. 이 '긴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기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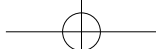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2. 소득·재산 참고 기준 (2019년)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000원, 4인기준 3,460,000원) 이하
- * 재산¹ : 대도시(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1억 1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긴급복지지원제도,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표10.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²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만 4,900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만3,200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만500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³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만1,600원 ☐ 중 35만2,700원 ☐ 고 43만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⁴)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긴급복지지원 연장결정을 받은 이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기초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복지원 불가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 상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 지원이 종료된 상태에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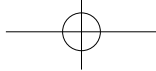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위기사유가 다르더라도 종전 위기사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⁵ 이내에는 지원
불가(의료지원 제외)

2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조율별 복합지원 가능함

3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4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5 단, 시·군·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생계지원 (2019년)

표11. 가구별 긴급생계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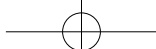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21,0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2. 의료지원 (2019년)

- 만성질환(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단, 의료법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 타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차액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감당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퇴원 전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2. 주거지원 (2019년)

표12. 가구별 긴급주거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3. 교육지원 (2019년)

표13. 가구별 긴급교육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4. 그 밖의 지원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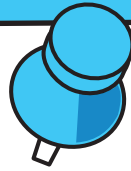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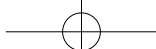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표14. 기타 긴급지원내용 및 금액 (단위 : 원)

지원종류	연료비 ⁶	해산비	장제비 ⁷	전기요금 ⁸
지원금액	월 98,000	600,000 (인당)	750,000	500,000 이내

6 동절기(10월~3월) 한정 월별 지원

7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등 타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8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의미함. 다만, ①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② 1가구 최대 50만원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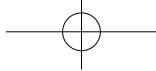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2부

수급권자 권리선언,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수급신청, 이의신청시 꼭 알아두자!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그림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과정



1. 수급신청

- 수급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합니다.
- 구비해 갈 서류(필수):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도장
- 아픈 곳이 있다면 각종 진단서도 꼭 떼어가세요.

수급신청 시 작성해야할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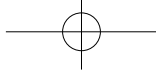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신청 시 작성해야할 서류 작성 예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필수 입력사항

(1면)

- ① 신청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기입
- ② 가족사항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사항 기입
- ③ 부양의무자에는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기입
- ④ 급여계좌에는 실제 급여를 수령할 계좌정보 기입
- ⑤ 통지방법에는 연락받기 편한 방법에 체크 (모두 체크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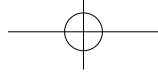


[서식 1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9.4.1>

[1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40101-1234567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전화번호	02-706-1233	
	주소 ¹⁾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	011-706-1233	
							전자우편	antipoorkr@gmail.com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부인	김영희	370202-1234567	동거	-	고혈압	없음	없음	02-706-1234
1.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³⁾ :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부양의무자 ³⁾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 번호		
	홍길동의 아들	홍00	123456-1234567	서울 00구 00동 000		모름	모름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⁴⁾			
	본인	홍	○○은행	1234567890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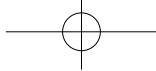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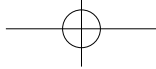
① 뒷면에서 받고자 하는 급여 항목에 모두 √ 표시

② 급여계좌에 구비해간 통장 정보 기입

③ 원하는 통지방법(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화 등 기타) 선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주거유형 : ☐ 임차5) ☐ 자가 ☐ 기타6)) ☒ 교육급여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에 모두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급여의 ☐에만 ☒표시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중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장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기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II) ☐ 타법 의료급여10)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9.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10.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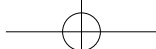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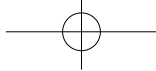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3 면]

〈안내사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서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 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II)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외국여권 포함)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외출생자에 한함) 15.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각 1부 (복수국적자에 한함)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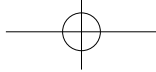
[4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할인 (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열사용자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휴대전화요금할인 신청시)					
가 족 사 랑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지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2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사식]

소득·재산 신고서 [☒ 신규 ☐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홍길동				
소득 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	0원	원	원	
		일용근로	0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원	원	
재산 사항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0원	토지	0원	
	선 박		0원	입목재산	0원	
	항공기		0원	어업권	0원	
	자동차		☐ 자동차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원) ☐ 기타(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마리 원)		분양권		0원
		☐ 돼지 (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0원
		☐ 기타가축 (마리, 원)		회원권		0원
		☐ 중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기타 재산	소계 (A-(B+C+E))		0원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0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0원			
	(C) 부채 상환액		0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0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³⁾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2019년 05월 27일 신청인(대리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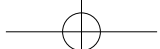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사항에 대해 상세히 적습니다.
- ② 소득이 없는 경우 모두 0원으로 작성합니다.
- ③ 한달 평균을 어렵게 작성하면 됩니다.



[서식3호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	홍길동	340101-1234567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등 보호자의 친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u>한글정자 서명 또는</u> <u>무인·인감</u>)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³⁾ (<u>한글정자 서명 또는</u> <u>무인·인감</u>)
아들	홍반장	580000-1234567	(서명 또는 인)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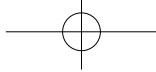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2019년 05월 27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방법

- ① 수급가구의 세대주 및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직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합니다.
- ③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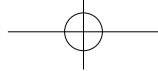


소명서		
1. 제목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소명	
2. 당사자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종로구 홍길동 1017번지
3. 의견	☐ 저는 현재 아는 동생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렸으나 다친 이후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술하에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이혼한 후 집을 나와 연락이 끊긴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기 어렵습니다.	
4.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홍길동 1017번지 (전화 : 02-706-1233)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종로 1~4가 동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절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명서는 공통지정양식이 없으며 동사무소마다 비치해둔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소명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이름, 주소지, 단절 사유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 구비해간 서류와 작성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신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급신청을 구두로 거절당해선 절대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 직원에게는 수급신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급여별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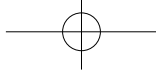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 담당 부처에서 선정여부 심사합니다.
- 30일 내에 처리 후 통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보

-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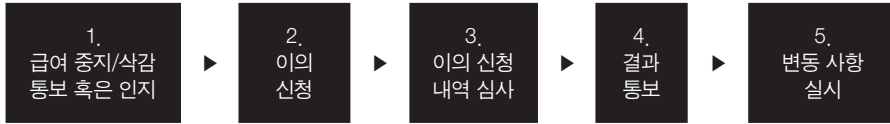
4. 급여 실시

-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 신청한 날로부터 생계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 통장에 지급된 각 급여액과 7p에 있는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비교하여 확인해봅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통장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2.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및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



1. 급여 중지/삭감통보 혹은 인지

- 급여의 중지, 삭감 등 변동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다음 양식에 사유를 작성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내역 심사

- 시장·구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처리 후 통보(사유에 따라 처리기한은 15일, 30일, 60일).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사유에 따라 연장시한도 45일, 60일, 90일)

4. 결과 통보

- 수급신청결과 통보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변동사항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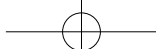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급여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하여 변동 내역을 실시합니다.



[서식8호 □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40101-1234567		
	주소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번호	02-706-1233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2019 년 01 월 01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이의신청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0월 0일 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이내, ⑩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누구나 부당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수급신청과 마찬가지로 구두로 거절당해선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수급자의 권리

1. 부양의무자기준 탈락?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했지만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을 시 소명을 통해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최근에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기준에서 탈락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 각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의 부양 단절을 인정하고,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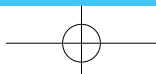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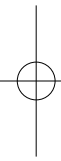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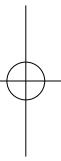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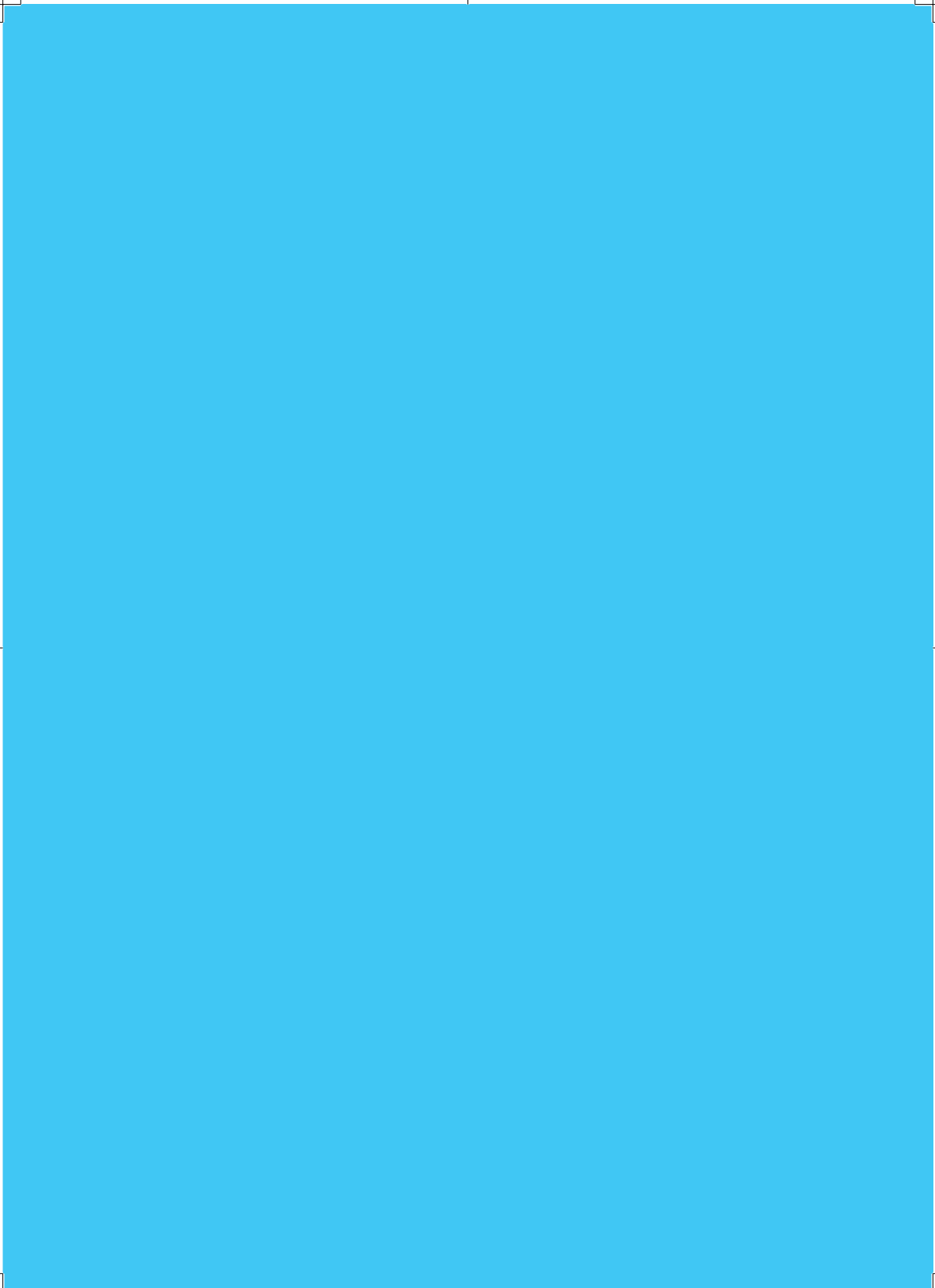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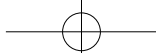
2.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부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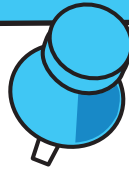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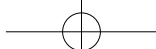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을 받게 됩니다.
- 취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 내려지는 경우에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수급자의 권리!

-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 국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빈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지 수급의 신청과 이용과정에 낙인감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 사회권은 이 사회에 사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인 인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사회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 누구나 평등하게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는 잘못된 복지제도에 제도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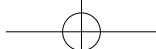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는 선정기준이 너무 낮고, 선정된다 하더라도 보장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복지수급자는 잘못된 복지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수급자의 힘으로 더 나은 복지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지 복지수급자들의 현실을 더 낫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예비 빈곤층(가난에 빠질 수 있는 모든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3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



1.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전면’ 폐지합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조차 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가지 급여 중 주거,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생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 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의와 죽음에 빠뜨린 악조항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급가정의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보기도 전에 가족들의 가난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과 그 가족들을 족쇄로 얹어 묶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위한 실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가능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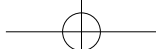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2. 생활 필수지출조차 할 수 없는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는 너무 낮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수급비는 기준중위소득 30%로 1인가구 기준 최대 51만2천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표15. 생계급여 기준 (단위: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15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제대로 만들겠다고 ‘맞춤형 개별급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생계급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 개정 전 현금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복잡해진 제도 운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의 한계입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2018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낮은 생계비는 수급자들의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수급비 현실화로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배움을 포기하는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3. 현실성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가짜소득부와 전면 개편하자!

현재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제¹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소득이 없어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도시규모별로 소득환산에서 제외시키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조금씩 늘려왔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표15. 기본재산 공제액(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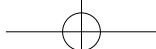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다고보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2년 동안 소진한다는 논리로 설정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는 재산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보다 1.5배 높게 설정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100%는 소득환산율의 도입 당시인 2003년도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적인 조항일 뿐만 아니라 차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징벌적인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16. 재산의 소득 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1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식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 (월 4.17%로 환산하는 차)

- ①차령 10년 이상 1600cc미만의 자동차/ ②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④2000cc미만 4~6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⑤1600cc 미만 생업용자동차
※1~3급 장애인 소유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보유한 경우 산정 제외, 그 외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절대빈곤에 놓여 삶이 무너지고 있지만, 건강이 더 나빠져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집을 팔고 더 가난해질 때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 역시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 국민들의 최저한의 삶과 자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있지도 않은 소득과 부양비를 간주하는 가짜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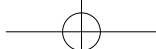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4.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강제근로 조항 폐지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을 받게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조건불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수급권을 박탈하기도 해 모든 이들에게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법의 목표와 모순됩니다.

수급권자들과 가장 근접한 동주민센터 전담공무원의 업무였던 근로능력판정은 객관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2010년'근로능력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시, 군, 구 단위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이관 받아 시행했고,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었습니다. 2012년 '근로능력있음' 판정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평가를 시작한 2013년에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15.2%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단순한 근로능력평가지표 몇 가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평가지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에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있음” 판정으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병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수급자의 형편과 사정에 기반하지 않은 근로능력평가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들을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 자리를 강제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일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일할 만한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빈곤층을 내몰 것이 아니라 탈빈곤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줬다 뺐는 기초연금 없애고, 노인빈곤 줄이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로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OECD가입국 평균 12.1%와 비교했을 때, 4배가량의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곤했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노인들에게도 매 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지급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수급비에서 깎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급비 때문에 고통 받다가 기초연금 인상에 희망을 걸었던 빈곤노인들은 '너무 처사하다', '분통이 터진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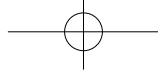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연금/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수급비와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와 아동양육의 특성상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노인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곤했던 기초연금은 빈곤상태에 처한 노인들에게 '줬다 뺐는 기초연금'으로 수급노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수급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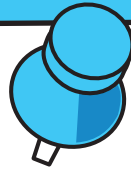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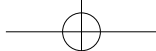
6. 주소지가 없어도 수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취약계층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의 확인 하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나 만화방, PC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리노숙중인 경우에는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주소지를 얻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주소지를 만들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조사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주소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겨우 선정되더라도 주소지 상실로 인해 곧바로 수급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없어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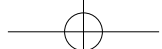
4부

부록

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답답할땐? 상담전화



부록1. 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과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계약체결 후 공급하는 매입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으로 각각의 임대주택의 순위는 가구월평균소득의 몇%인가에 따라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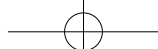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확인하세요!

- 1)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함.
- 2)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①세대주 / ②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③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면 됨.
 -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불가 ※ 한국국적의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경우 신청가능

- 3)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구 등이 기준이 됩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이하 가구는 같은 내용으로 적용)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 50%이하	2,700,907원	3,082,601원	3,349,933원
소득 70%이하	3,781,270원	4,315,641원	4,689,906원
소득 100%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소득 120%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 4) 청약저축 가입 여부(신청 시 무관) * 청약저축 적립 개월 수가 중요합니다.
- 5) 신청창구가 어디인지(동주민센터/인터넷 등), 공고시 신청 순위를 확인하세요.
- 6) 보증금 지불 능력 및 월임대료 지불 가능여부 확인, 보증금 지불 능력 안 될 경우 (대출, 기타 지원제도) 계약기간 적정 보증금 투입계획도 필요합니다. 상담창구 연계 / 연체 시 연체 임대료 분할납부 가능한 방법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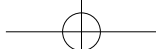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유형 별 평균임대료 및 소득기준 요약(SH기준)

영구임대(50년)		매입임대(20년)		전세임대(20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	☐ 평균보증금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기준) 190만원 (수급자외) 650만원	☐ 평균보증금 : 5백만원(원룸형기준) 18백만원(다가구형)	☐ 보증금 지원 서울시의 경우 최대 9천 만원으로 이중 5% 입주자 부담 (신혼부부, 청년세대는 1억2천만원)		
	☐ 평균임대료 : (생계,의료 수급자기준) 4만5천원 (수급자외) 8만원	☐ 평균임대료 : 10만원(원룸형기준) 19만원(다가구형)			
공고기간 및 신청장소	공고기간 내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공고기간 내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공고기간 내 신청 신혼부부, 청년세대 수시		
소득기준	☐ 1순위 : 생계, 의료 급여수급, 한부모가족 등 공고문 1순위 대상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국민임대(30년)		재개발임대(30년/10년)		행복주택(6년/20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	☐ 평균보증금: 3,700만원 ☐ 평균임대료 : 28만원	☐ 평균보증금 : 533만원~3,805만원 ☐ 평균임대료 : 63,700원~315,100원	☐ 평균보증금 : 3,700만원 ☐ 평균임대료 : 28만원		
공고기간 및 신청장소	공고기간 내 신청 인터넷(공사방문)	공고기간 내 신청 인터넷(공사방문)	공고기간 내 신청 인터넷(공사방문)		
소득기준	☐ 70%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50%이하- 1순위 ☐ 70% 이하-2순위	☐ 100%이하 (청년계층 본인 80%)		

문의

-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뒷장 참조
- ☐ LH공사 대표번호 1600-1004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 SH공사 대표번호 1600-3456 홈페이지 www.i-sh.co.kr
- ※ LH, SH 대표번호 연결해 공공임대주택 문자서비스 신청하세요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부합하면 영구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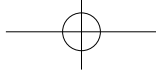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		세부자격	자산기준
일반 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④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총자산1.78억원 이하의 경우 임주와 재계약가능함 (영구,매입, 전세 모두 적용) 자동차 : 2,545만원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이하 금융자산(부채반영)
	2순위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⑨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경우는 그 배우자를 포함) 으로서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해마다 변경됨
우선공급		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민주유공자 및 가족 등 (공급물량의 10%) ② 신혼부부 (공급 물량의 10%)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③귀환국군포로(시·도지사 결정)	한시적 적용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체결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수준

신청방법



입주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거주 가능

임대료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1999년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60% 허용
LH공사의 경우 기본 월임대료의 50%를 상한선으로 임대보증금 증액전환만 허용

구분	수급가구		수급가구 외 가구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강북 40㎡	3,573,000	71,160	10,225,000	115,150
방화 33㎡	2,775,000	55,270	13,071,000	148,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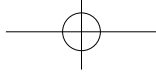
(단위: 원)

감안할 점

2014년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입주대기기간은 평균 21개월로 대기기간이 비교적 길다.
대부분이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택으로 시설이 노후한 편입니다.

2. 기존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

LH 및 SH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최장 20년까지 거주(계약회수 10회, 계약기간 2년 최장 2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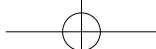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대상	임대조건
일반주택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 주거급여수급가구,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미달 혹은 RIR30%이상인 자 - 기초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고령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70%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20년) ☐ 임대보증금: m ² 당 89,620원(약 450만원) ☐ 월 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 금액(약 10만원)
공동생활가구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횟수제한 없음)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무료 원칙 - 자체 운영기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징수 가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 일정 소득(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 ☐ 일정 자산 이하의 쪽방 ·고시원·여인숙·노숙인복지시설거주자 중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거주지 관할 시장·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통보한 자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 임대보증금: 50만원 - 월 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한 월세환산액 ☐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 영세민 전세임대와 동일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중 시장·구청장이 LH공사/SH공사에 통보한 자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20년)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 금액

신청방법

입주대상자가 시·군·구에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SH공사 및 L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개보수 → 시·군·구의 추천대상자 입주



※tip.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은 수시 접수합니다! 동주민센터, 매입임대주택운영기관, LH에 문의하세요.

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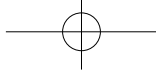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한 가격에 의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정해지는데, 보증금은 시중 전세가격의 30~35% 수준임.
- LH공사 : 평균 400만원 / SH공사 : 평균 800만원~1500만원, 지하층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는 지상층 임대보증금의 2/3 수준으로 결정
- 월 임대료는 100,000원~150,000원선

감안할 점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으로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주택위치가 정해져 있고 공급물량이 매우 적으며 대도시의 경우 보증금 수준이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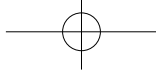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적으로 거주(계약회수 10회, 계약기간 2년 최장 20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 반전세 등의 추세로 반전세(보증부월세)도 계약이 가능하며 주거용오피스텔도 요건에 부합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유형 및 신청자격

구분	기존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목적	도심의 최저소득계층 생활권 내의 주거안정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 아동·청소년 주거안정
임대사업자	LH공사/SH공사(지방공사)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주택규모	85㎡ 이하 (※1인 거주 시 비장애인 50㎡/ 장애인 60㎡ 이하)	
입주자격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30%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전세금의 연2%임대료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만 20세까지 무상
월임대료	기금의 연2% / 통상10만원 ~18만원 선임.	

※ 월 임대료 기금: 주택도시기금/ 적용금리: 시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목적	신혼부부 주거안정	청년주거비 부담해소
임대사업자	NH공사/SH공사(지방공사)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 재계약	2년 단위 3회 재계약(최장 6년)
주택규모	85㎡ 이하 (※1인 거주 시 비장애인 50㎡/ 장애인 60㎡ 이하)	60㎡ 이하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학소재지 외 타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 수급자(생계, 의료급여),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 2순위: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생 - 3순위 : 1, 2순위에 비해당 대학생과 취준생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100~200만원 수준
월임대료	기금의 연2% / 통상10만원 ~18만원 선임.	8~20만원 수준

※ 월 임대료 기금: 주택도시기금/ 적용금리: 시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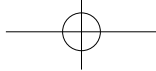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 일반주택전세임대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
- 2) 소년소녀 전세임대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
- 3)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전세임대 : 수도권·광역시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
- 4)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 5) 공동생활가정 수도권·광역시 1억5백만원, 기타지역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가능.



단,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가구원 수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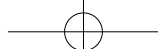
- ※ 보증부월세도 계약가능(*임대료 3개월분 본인부담 보증금에 포함), 주택이외 주거용오피스텔도 계약 가능함
- ※ 입주 시 도배장판 시공(10년단위 1회)
-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입주대상자가 시·군·구에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지자체 혹은 LH공사 가구선정 후 통지→ 지원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 본인이 물색(*부동산 통해)→ 해당 주택 임대인 동의 득함→ 지자체 혹은 LH공사: 임대인과 입주자 함께 전세계약 체결(법무사파견)

감안할 점

전세임대주택은 계약 가능한 주택물색이 쉽지 않은 점. 관련된 서류를 보내 심사받아야해 임대인(집주인)이 꺼린다는 것, 2년 재계약시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이주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낮추고 이후 안정된 주거를 도모하는데,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노령가구, 장애인가구가 주로 활용합니다.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등에게 보증금이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LH가 공급해왔습니다. 2018년
SH는 매입임대주택을 매우 소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SH는 보증금 100만원임)

신청자격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범죄피해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선정기준

- ☐ 시장·군수·구청장, 주거급여 조사기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타 자격: 자산(토지, 금융, 자동차 포함) 1.78억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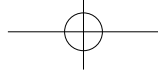
지원내용(단위: 만원)

대상자 유형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 시설 거주자	9,000	7,000	6,000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9,000	7,000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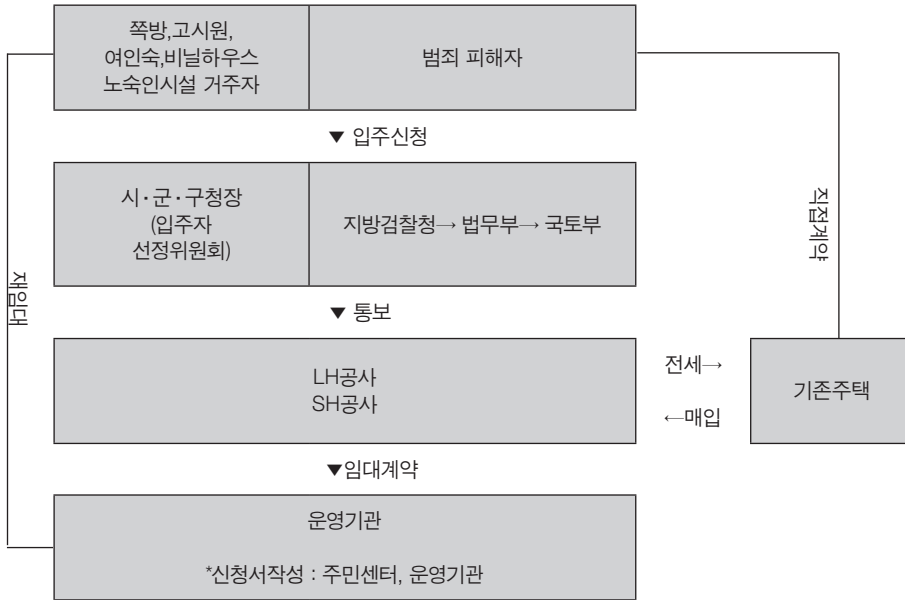
쪽방 등 거주자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모두 보증금 50만원 본인 부담이 있음. 비닐하우스 등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금의 5%를 본인이 부담함

입주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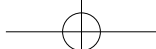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에서 확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안할 점

주거취약계층의 수와 대비해 볼 때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며, 신청절차 상 신청서식이 타 임대주택에 없는 <자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에 입주자선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심사일도 일정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고 심사기준이 보편화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5.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에게 SH와(지방공사) LH의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SH와 LH에 통보한 자
-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단,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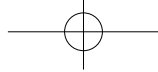
선정기준

- ☐ 위기상황 유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 지자체조례(*각 지자체 조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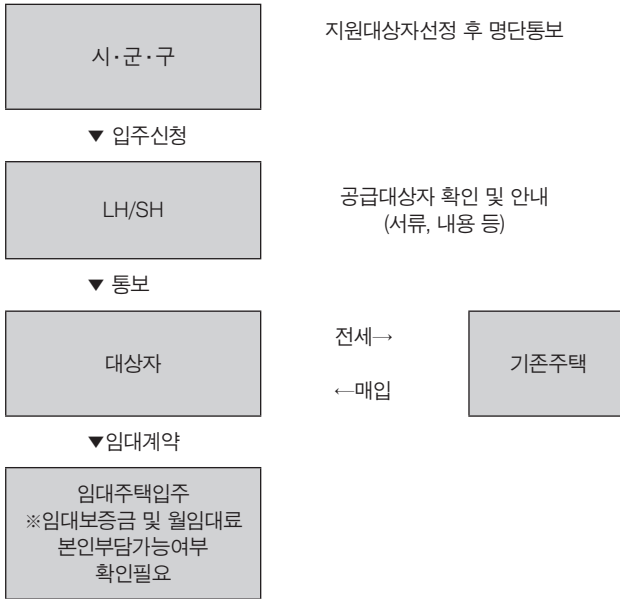
구분	전용면적(㎡)	임대료 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85㎡이하 (1인 40㎡ 이하)	시중임대료의 30%수준 보증금 100~425만원 월임대료 1~11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이하 (1인50㎡이하)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1) 40㎡*78,700원(*12년 기준 단위면적(㎡)당 단가)

*2) (시중전세가격의 30%-임대보증금)*10%(*12년 기준 전세환산이율)/12월



신청방법



입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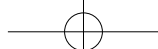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감안할 점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이거나 종료된 이후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으나 긴급복지제도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긴급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인지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 재개발임대주택 (SH)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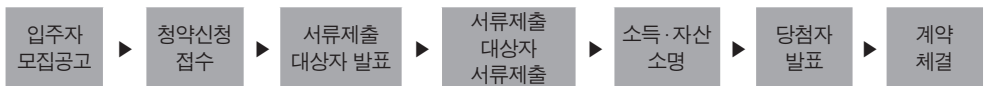
입주자격

- 1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2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 3순위: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 4순위: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신규 건설시 입주한 경우에는 50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신규건설 이후 공가가 발생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건설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역 및 건축년도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50년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함.
- 임대보증금은 700~2,500만원, 월 임대료는 85,000~265,000원 수준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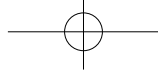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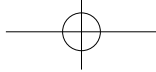
7.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공사, SH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 30년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자산: (토지 및 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89만원 이하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 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 -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 경쟁: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 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 경쟁: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 인 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 ☐ 혼인 기간에 임신 중/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로 국민임대 입주자격 해당자	☐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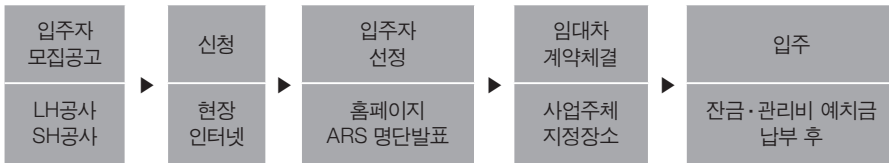


우선공급	1. 사업지구 철거민 등(공급물량의 10%) 2. 장애인 등(공급물량의 20%): 소득 50%이하(50㎡이하 만)→ 장애등급→ 배점순서로 공급 3. 3자녀 이상(공급물량의 10%) 4. 국가유공자 등(공급물량의 10%)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공급물량의 3%) 6.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공급물량의 2%) 7. 신혼부부(공급물량의 30%): 소득 50%이하(50㎡이하 만)→청약순위→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자녀수
※ 참고: 상기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에 대한 배점 기준 - 세대주(3점), 부양가족수(3점), 거주기간(3점), 노부모 부양(3점), 미성년자수(3점), 청약저축횟수(3점), - 중소제조업종사자(3점), 사회취약계층(3점), 건설공제부금적립(3점)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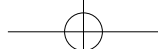
8.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계층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특징

입주 대상계층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달리 적용

- 임대기간 및 면적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그 외 대상별 상이 / 전용면적 45㎡ 이하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60 ~ 80% 수준(평균보증금 : 3,700만원, 임대료 : 28만원)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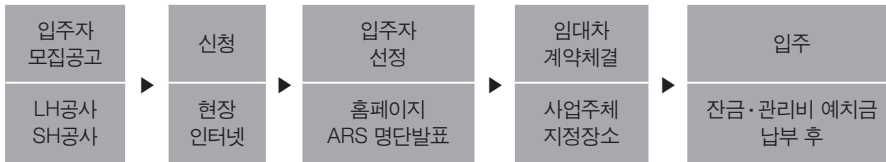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일 것
-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4) 해당 세대가 보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신청방법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신청 또는 공사 직접방문 신청
- ※ 인터넷 청약 접수 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소지 필요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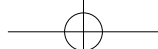


9.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SH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공급 60% + 특별공급 40%(신혼부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2년마다 재계약 총 5회 계약)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 자산기준(2018년 기준) -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 20,90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기준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545만원 이하
- 입주대상 : 일반입주자(70%) 및 우선공급대상자(30%)
 - 우선공급대상자 : 신혼부부 20%, 다자녀 가구 10% 소득기준

대상주택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60㎡ 이하 이고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인 주택 단, 2인 이상의 가구는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은 3억3천만원 이하 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2천만원(2인 이상의 가구는 3억3천만원)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월세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신청방법



☐ 현장접수(수시)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간 내 수시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안함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 또는 지구 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입력) → 6단계(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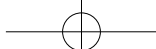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비고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10.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월세 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장애등급: 장애 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 경우)인 세대주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가능
-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120% 이내 자
- ☐ 주거상태: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 지원대상(우선)

- ☐ 체험 홈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2인 이하(120백만원), 3인 이상(15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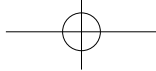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신청기한 : '19. 3. 29한정

2) 전세지원금 한도액

- 2인 미만 가구: 8,5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9,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2월)
- 입주자 모집공고: 매년 초 / 신청 시기: 해당년도 중
-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표에 의한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자치구별 선정)
- 입주방법: 자치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공통구비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현 거주 주택 원세임대차 계약서 1부 (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비고

-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홈페이지) <http://disability.seoul.go.kr>

11. 버팀목 대출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제도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통합,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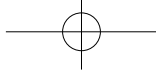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 1주택에 2가구 이상의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가능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수도권은 1억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인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자

지원내용

- ☐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임차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1%p 우대하고, 다자녀 0.5%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에 0.2%p를 우대하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1%p 우대와 다자녀 등의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함

(단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소득 2천만원 이하	2.3	2.4	2.5
소득 2천~4천만원이하	2.5	2.6	2.7
소득 4천~5천만원 (신혼부부6천만원)	2.7	2.8	2.9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상담 후 진행

신청기간

☐ 2년 이내 일시 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12.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가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은행권으로 통해 진행하므로 금융채무연체자(신용불량)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제외)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 고시원·대출 불가

지원내용

☐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담보

☐ 대출한도: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 대출

☐ 금리: 연 1.5%(2015.4.27 현재)

☐ 신청시기: 월세임대계약 사실이 증빙 될 경우 가능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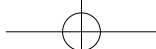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신청대상자가 임차주택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

※ 지자체: 확인서류만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 비수급자 등

상환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13.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임대보증금 대출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근로신혼부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근로신혼부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저소득 한부모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대출한도

- ☐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 상한액 1천 만원

대출금리

- ☐ 연 2%/ 10년 균등분할 상환, 매달 고지서 상환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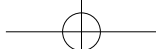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14.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신청대상

- ☐ 만 20~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2) 사회초년생 : 첫 취업 후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3) 신흥부부 : 결혼 후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만 39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대상주택

- ☐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1억 9천만원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을 기준으로 보증금 1천만원당 월 임대료 4.2만원 변동, 전월세변환율 적용)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 연2%(은행권이 상담부터 받아야함)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이내) ※ 단, 기한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신청방법

-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사이트 정보검색 및 인터넷 접수
주무과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담당
문의처 : 1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포털사이트

15.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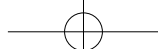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계층

지원내용

- ☐ 공공주도형
- 자치구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별 집수리
- 수리항목: 13개 공중내역 수리(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 지원범위: 호당 120만원 이내

☐ 민간참여형

-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민간기부금 및 시 예산 매칭으로 집수리
- 주택에너지효율 개선(단열, 이중창 교체, LED등 설치 등) 집수리
- 수리항목: 5개 공종내역 수리(도배, 장판, 단열, 새시(이중창), 전기)
- 지원범위: 호당 300만원 이내(시 지원금액 130만원 이내)

☐ 진행절차

- 자치구: 예비 대상가구 선정→ 위탁기관: 현장실사/기술자 문회의→ 최종대상가구 선정
-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상자 수시 발굴
- ※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 가구(유지수선급여 대상가구)제외

신청방법

- ☐ 거주지 동주민센터 집수리 신청, 구청 사회복지과/주택과 문의
-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02-2133-1216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

16.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기초보장수급 선정 상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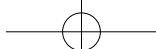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 거주기간 1개월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금액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43%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 대상자의 경우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소득환산율 100%적용 자동차 기준이 적합한 가구
- 부양의무자의 경우 재산기준 6억원 이하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상이함.



지원내용

- 생계급여(소득구간별 차등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동일)
※ 단, 근로능력이구의 보장기간은 3개월(최대 6개월), 연1회로 제한(직전 급여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생계급여 최대지원 맞춤형생계급여의 1/2수준, 최소지원 1/3수준임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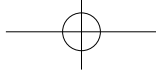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능력 판정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사본,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작성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

17.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의료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 단,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속하는 가구
 - 재산기준 1억 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의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관련,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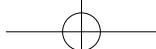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의료비의 경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내
 - 지원금액: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가구 70만원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청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팀(02-2133-7381) 또는 다산콜센터(120)



부록2.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정부 의료비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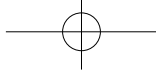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1000원,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20%



2.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개요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대상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기타 : 상기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소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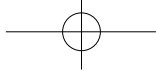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회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외래의 경우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비 합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회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외래의 경우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비 합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회 입원 진료비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15%초과(외래의 경우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비 합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1회 입원 진료비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20%초과(외래의 경우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비 합산 기준)



지원내용

- ☐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 까지(투약일수 제외)
- ☐ 지원수준: 연간 2천만원
-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 ☐ 지원수횟수: 지원기준 충족 시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지원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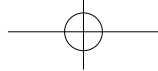
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중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확인만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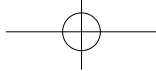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951종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1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진료비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보장구 구입비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성상실(N18)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91개 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94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95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 (7개 질환)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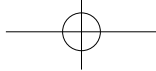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51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1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장애인등록자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4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5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지급기준 변동가능
③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제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만 19세 이상 ※ 19세 미만 생일이 숙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33)736-3292],

희귀질환 헬프라인 [(043)719-8686, 8688]



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

대상

- ☐ 소아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만 18세 미만인 자,
- ☐ 성인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소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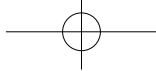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1,122,532원	245,641,094원	270,202,360원	294,763,626원	319,324,892원	343,886,158원

의료비 지원 한도액

지원대상		지원한도액
소아암·성인암 공통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의료비 -암 진단일 이후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소아·아동암환자	백혈병	당해 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백혈병 이외에 암종	당해 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암환자		당해 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당해 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당해 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00만원



폐암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당해 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당해 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20만원, 비급여비용 100만원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립암센터 (1588-811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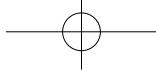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대상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입원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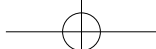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보건복지콜센터 (129)

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2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7.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에 따른 치료 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² 및 선천성 이상아³인 경우(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1) 미숙아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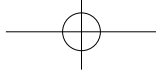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지원내용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2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단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3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제외

□ 1인당 최고지원금액

구분	출생시 체중	1인당 최고지원금액
미숙아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 ~ 2.0kg 미만	4백만원
	1kg ~ 1.5kg 미만	7백만원
	1kg 미만	1천만원

(2)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일부분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외래 및 재합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제외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차등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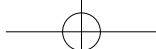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할 보건소



2. 주요 민간단체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http://heart.or.kr> , 02-414-5321)**

-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콩팥이식, 얼굴기형, 만 18세 이하 기타질환 지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childfund.or.kr> , 1588-1940)**

- 빈곤가정 아동 치료비, 수술비, 약값, 의료□보장구, 심리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http://kclf.org> , 02-766-7671)**

- 19세 이하의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http://kord.or.kr> , 02-714-5522/8338)**

- 희귀난치질환자 검사, 입원, 수술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아름다운재단 (<http://beautifulfund.org> , 02-766-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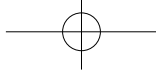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 이혼동이(미숙아) 입원치료, 재활치료비 지원
-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http://heart-heart.org> , 02-430-2000)**

- (아동이 포함된)저소득가구 생계비 지원
- 화상환아, 미숙아, 안질환 의료비 지원

※ 재단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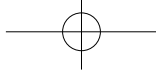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이런 경우는 근처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부록3. 답답할땐? 상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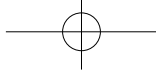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1. 각종 상담전화 *국번없이

	기관	전화번호	상담내용
복지상담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종합민원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임대주택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융상담 (파산/면책)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1833-6008	파산, 면책, 금융상담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파산, 면책, 금융상담
홀리스 복지 상담	홀리스행동	02-2634-4331	홀리스복지, 홀리스인권상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02-777-5217~9	홀리스복지상담
	브릿지종합지원센터	02-363-9195.9199	홀리스복지상담
	서울역쪽방상담소	02-3789-5119	홀리스복지상담
	영등포쪽방상담소	02-2636-3373	홀리스복지상담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	홀리스복지상담
인권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인권상담
	국민권익위원회	1398*	공익신고(부패행위 등)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인권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성희롱, 성폭력
청소년· 자살	생명의전화	1588-9191	위기/자살/도박 상담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자살예방/상담
	청소년상담전화 헬프콜	1388*	청소년고민, 가출, 구조요청 등
장애인 차별·복지 상담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1670-5529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복지/인권/차별 상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02-738-0420	탈시설/자립, 장애인복지
노동·법률 상담	고용노동부	1350*	고용보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민주노총	1577-2260	고용보험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노동상담, 법률상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670-0121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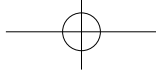
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추가)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강남주거복지센터	070-5008-9216	강남구 광평로 295, 사이룩스 서관 309호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507호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강북구 삼양로 35길 34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B23호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5-3197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금천주거복지센터	02-855-4522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311-2호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도봉주거복지센터	02-6958-8081	도봉구 도봉로 152길 26, 렉시온프라자 204호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2138-1901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호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주공1단지 상가 202호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아파텔 206호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03-3733	서대문구 거목골로 4-18, 1층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	서초구 청계산로9길 1-3, 서초선포레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204호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 환승주차빌딩 705호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 501호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602호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트 미래청 506B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종로구 종로 11길 18 선일빌딩 4층 503호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중랑주거복지센터	02-3421-8961	중랑구 신내로 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1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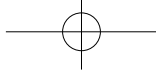


3. LH 주거급여 사무소 (전국49개)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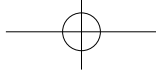
주거급여 사업소				
소속		지역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	강남권센터	강남권1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 동구,동작구,관악구	02-2182-2751,2
	강서권센터	강서권	영등포구,양천구,구로구, 금천구,강서구	02-2169-8835
	강북권센터	강북권1	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종랑구,광진구	02-964-4212
		강북권2	종로구,중구,용산구,마포 구,서대문구,은평구	02-764-3167
		강북권3	도봉구,노원구,강북구	02-3392-2671
	의정부센터	의정부권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 시,양주시,연천군	031-875-8517
	남양주센터	남양주권	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 구리시,하남시	031-590-6637
인천	인천남동권센터	인천남동권	남구,남동구,연수구	032-717-5277
	인천북서권센터	인천북서권	부평구,계양구,동구,중구	032-717-5261
	부천권센터	부천권	부천시,광명시,시흥시	032-712-5201
	김포권센터	김포권	인천광역시서구,김포시, 강화군	031-8048-5411
	고양파주권 주거복지단	고양권	고양시	031-927-0361
		파주권	파주시	031-934-5643



경기	성남권센터	성남권	성남시,광주시	031-778-3132
	용인권센터	용인권	용인시,이천시,여주시	031-280-4773
	화성권센터	화성권	화성시	031-831-2420
	오산권센터	오산권	오산시,평택시,안성시	031-378-7292
	수원안양권 주거복지단	수원권	수원시	031-323-9148
		안양권	안양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031-467-5734
	주거복지 사업2부	안산권	안산시	031-411-7140
부산 울산	주거복지 사업2부	부산권1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연제구, 수영구,기장군	051-796-6014
		부산권2	사상구,사하구,북구,강서구	051-796-6032
		부산권3	진구,동구,서구,남구,중구,영도 구	051-796-6057
		울산권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052-269-8093
강원	원주권센터	원주권	원주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	033-760-6254
	주거복지사업부	춘천권	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033-258-4141
	강릉권센터	강릉권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033-610-5174
		삼척권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033-610-5173
충북	주거복지 사업2부	청주권	청주시,진천군,보은군,옥 천군,영동군	043-220-8852
	충북동북부권 센터	충북 동부권	충주시,제천시,단양군,증 평군,괴산군,음성군	043-820-9191



대전 충남	주거복지 사업2부	대전권1	동구,충구,대덕구,금산군	042-470-0261,0255,0258
		대전권2	서구,유성구,논산시,계룡시,세종시	042-470-0269,0265,0266
	천안권센터	천안권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041-538-5828
	충남북부권센터	충남 서남부권	공주시,보령시,서산시,보여군,청양군,홍성군,태안군	041-854-8311,8312
전북	주거복지 사업2부	전주권	전주시,진안군,장수군,무주군,부안군	063-230-6295
		정읍면	정읍시,김제시,남원시,임실군,고창군,순창군	063-230-6297
	익산권센터	익산권	군산시,익산시,완주군	063-840-0951
광주 전남	주거복지 사업2부	광주권1	동구,북구,담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062-360-3212
		광주권2	서구,남구,광산구,나주시,구례군,곡성군,영광군	062-360-3233
	목포권센터	목포권	목포시,강진군,장흥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신안군,진도군,완도군	061-285-8395
	순천권센터	순천권	순천시,여수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061-900-4390
대구 경북	주거복지 사업2부	대구권1	달서구,남구,달성군,고령군,성주군	053-603-2764
		대구권2	북구,서구,중구,수성구,군위군,칠곡군	053-603-2783
	대구동부권센터	대구동부권	동구,경주시,영천시,경산시,청도군	053-350-6031
	경북동부권센터	경북동부권2	포항시,울릉군,울진군,영양군,영덕군,청송군	054-280-4731
	경북서부권센터	경북서부권	구미시,안동시,영주시,문경시,상주시,김천시,예천군,의성군,봉화군	054-450-2400



경남	주거복지 사업2부	경남중부권	창원시(마산,진해포함),통 영시,거제시,고성군,함안 군,창녕군,의령군,	055-210-8657,8635
	경남서부권센터	경남서부권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 동군,산청군,거창군,합천 군,함양군	070-7450-8731
	양산권센터	경남동부권	양산시,김해시,밀양시	070-7450-9170
제주	주거복지 사업부	제주권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064-720-3997